KOSHA GUIDE

C - 29 - 2017

6. 설치ㆍ사용 시 주의사항

- (1) 수직보호망은 한국산업표준(KS F 8081) 또는 고용노동부 고시 "방호장치 안전인증고시"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.
- (2) 수직보호망이 설치되는 가설구조물의 붕괴 또는 전도위험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.
- (3) 수직보호망을 설치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고소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토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(4) 수직보호망을 재사용 할 경우에는 수직보호망의 성능이 신품과 동등 이상이고 외적으로 손상이나 변형이 없어야 한다.
- (5) 수직보호망을 설치하기 전에 다음의 표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.
 - (가)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
 - (나) 제조 연월
 - (다) 안전인증번호